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32

제출년월일: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의 조문 등을 수정하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특화경관지구를 세분하여 기존의 미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의 명칭 재편(안 제8조의2)
-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고, 인용조항 현행화 (안 제19조의3)
-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 면적 조정(안 제27조, 제29조)
- 중심지·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 중심지·일반미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함(안 제43조, 제46조)
- 역사문화미관지구, 조망가로미관지구, 수변경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,

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,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대체하고, 지정대상을 규정(안 제44조, 제44조의 2, 제44조의3)

- 특화경관지구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근거 마련(안 제45조제3항)
- 미관지구 명칭을 시가지·특화경관지구로 대체(안 별표 4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건축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18, 5, 24, ~ 6, 14,) 결과: 의견 있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붙임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"시계(시계)경관지구"를 "시계경관지구"로 한다.

제8조의2 제목 "(미관지구의 세분)"을 "(특화경관지구의 세분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미관지구"를 "특화경관지구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: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 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
- 2.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: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 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구
- 3. 수변특화경관지구: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영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"를 "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미 관지구, 보존지구"를 "보호지구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호 외의 부분 중 "영 제42조의2 제2항 제15호"를 "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각호 외의 부분 중 "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"를 "영 제42조의3제2항제14호"로 한다.

제27조제1호차목 중 "1천제곱미터"를 "5백제곱미터"로 한다.

제29조제1호 중 "자동차영업소 및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"을 "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,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"으로 한다.

제41조를 제44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"(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"을 "(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"수변경관지구"을 각각 "수변특화경관지구"로 한다.

제43조를 삭제하고, 제44조를 제43조로 하며,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(종전의 제44조) 제목 "(용도제한)"을 "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영제73조제1항"을 "영제72조제1항"으로, "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"를 "시가지경관지구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9호) 중 "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"을 "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"으로, "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, 제7호 및 제8호"를 "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, 제6호 및 제7호"로, "미관지구"를 "시가지경관지구"로 한다.

제44조 앞의 "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"을 삭제한다.

- 제44조(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) ① 역사문화특화경관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.
 - 1. 궁궐·성·왕릉 등 면단위지정문화재 또는 근현대 건축물·사적지 등 역사·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주변지역으로서 역사 또는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
 - 2. 한옥밀집지역으로서 한옥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
 -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6호의 위락

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,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2 (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,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「건축법」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45조제1항제1호 중 "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조망가로미관지구"를 "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건축위원회"를 "건축(경관)위원회"로, "미관상"을 "경관상"으로, "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"로, "조망가로미관지구"를 "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"로, "미관"을 "경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미관도로변"을 "경관도로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조망가로미관지구"를 "조망가로 미관지구"를 "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조망가로투화경관지구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조망가로투화경관지구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조망가로투화경관지구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"를 "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"로, "도시미관"을 "도시경관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·형태·배치·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영 제73조제2항"을 "영 제72조제3항"으로, "미관지구"를 "시가지경관지구·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·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영 제73조제2항"을 "영 제72조제3항"으로, "미관지구"를 "시가지경관지구·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·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"로, "도시미관"을 "도시경관"으로 한다.

제47조 앞의 "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"을 삭제한다. 제47조 앞에 "제3절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"을 신설한다.

제50조 앞의 "제5절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"을 삭제한다.

제50조 앞에 "제4절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"을 신설한다.

제54조 앞의 "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"을 삭제한다. 제54조 앞에 "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"을 신설한다.

제55조의2 앞의 "제7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"를 삭제한다. 제55조의2 앞에 "제6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"를 신설한다.

제55조의3 앞의 "제8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"를 삭제한다. 제55조의3 앞에 "제7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"를 신설한다.

[별표 4]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각 호 외의 부분 중 "미관지구"를 "시가지·특화경관지구"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「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(법률 제14795호, 2017.4.18.)」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8553호, 2017.12.29.)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(2018.4.19.)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43조,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종전의 미관지구	경관지구
1. 중심지미관지구	1. 시가지경관지구
2. 일반미관지구	1. 시/[시정선시기
3. 역사문화미관지구	2.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
4. 조망가로미관지구	3.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

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「국 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(법률 제14795호, 2017.4.18.)」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28553호, 2017.12.29.)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 (2018.4.19.)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의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"를 "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"로, 제7조제1항제1호다목1), 2) 및 3)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 2호다목1), 2) 및 3) 외의 부분 본문 중 "미관지구"를 각각 "시가지·특화경관지구"로, 제33조제2호 전단 중 "상업지역·미관지구"를 "상업지역·시가지·특화경관지구"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3호 중 "미관지구, 보존지구"를 "보호지구"로 한다. 제22조제1항제5호 중 "경관·미관지구"를 "경관지구"로 한다.

- ③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4조제1항제1호 중 "경관지구"를 "경관지구(시가지·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)"로 한다.
- ④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"를 "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"로 한다.
- ⑤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제2호가목 중 "최고고도지구(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)"를 "고도지구(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제외한다)"

로 한다.

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최고고도지구"를 "고도지구"로 한다.

혀 행

- - 1. <u>시계(시계)경관지구</u> :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.·3. 삭 제
- 제8조의2<u>(미관지구의 세분)</u> ①영 제 7 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 는 미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중심지미관지구: 토지의 이용 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·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 - 2. 역사문화미관지구: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 물 등의 미관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 - 3. 조망가로미관지구 : 도시이미 지 및 주변자연경관의 조망확보 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미관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

(겨과지구이	세보)	1)

아

개 정

	_
	_
1. <u>시계경관지구</u>	_
	_

- 1.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: 문화 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 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2.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: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 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
- 3. 수변특화경관지구 : 지역 내 주 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 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구

- 4. 일반미관지구: 중심지미관지구,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제19조의3(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저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) ① <u>영 제</u>42조의2 제2항 제13호,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·군·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 - 1.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, <u>미관지</u> <u>구, 보존지구</u>, 취락지구, 개발진 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 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
 - 2.·3. (생략)
 - ② <u>영 제42조의2 제2항 제15호</u>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, 기반시 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 - 1. ~ 4. (생략)
 - ③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 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4. (생략)

<삭 <u>제></u>

∥19조의3(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
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) ① 영제
42조의3제2항제13호
 .
1 <u>보호지구</u>
2.·3.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
1 4 (취레이 키스)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4호
· 1. ~ 4. (현행과 같음)

- 제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종일반 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 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

가. ~ 자. (생 략)

- 차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 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일반업 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 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<u>1천제곱미터</u> 미만인 것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2. ~ 10. (생략)
- 제29조(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 전 축할 수 있는 건축물)제3종일반주 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4호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, 자동 차영업소 및 총포판매소는 2천제

세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)
1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 차
<u>5백제곱미터</u>
, <u>자동</u> , <u>자동</u> 키여어ㅅ노 1원제고미디 미마

2. ~ 16. (생략)

- 제41조(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전체한)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·형태·배치·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계획하여야 한다.
 -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경 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 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 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.
 - ③수변경관지구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당해 허가권자가 산 지,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 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.
 - ④<u>수변경관지구</u>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3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시가지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지

2. ~ 16. (현행과 같음)
세44조의3 (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
의 건축제한) ① 수변
 특화경관지구
 .
② <u>수변특화경</u>
관지구
·
③ 수변특화경관지구
© <u>1 한국왕/8원시 </u>
④수변특화경관지구
<삭 제>

정할 수 있다.

- 1. 주거지역으로서 양호한 주거환 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
- 2. 기타 시가지의 도시경관 보호 를 위해 필요한 지역
-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- 1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<u>공장</u>
- 2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
- 3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는 제외한다)
- 4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은 제외 한다)
- 5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· 가축시설·도축장 및 도계장
- 6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7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-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지정·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 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.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의 높이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 하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(용도제한) ①영 제73조제1항 제43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 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(생략)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
- 3. ~ 8. (생략)
- 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.·11. (생략)
- ②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 화미관지구·조망가로미관지구안에 서는 제1항 각 호의 건축물과「건 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6호의 위 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📗 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

<삭 제>

축제한) ①영 제72조제1항- 시가 지경관지구----

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2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 지와 같음)
-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-----
- 9.·10. (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)

<삭 제>

② 제1항-----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, 제6 와, 제7호 및 제8호의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호 및 제7호
시가지경관
지구
세44조(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
서의 건축제한) ① 역사문화특화
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.
1. 궁궐·성·왕릉 등 면단위지정문
화재 또는 근현대 건축물·사적지
<u>등</u> 역사·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
조물 주변지역으로서 역사 또는
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거나 형성
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
2. 한옥밀집지역으로서 한옥경관
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
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
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제
1항 각 호의 건축물과「건축법 시
행령」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

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,

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「건

<신 설>

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

축법」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 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 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제44조의2 (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 에서의 건축제한) ① 영 제72조제 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 축물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.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「건 축법」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 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 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제45조(건축물의 높이) ① 영 제73 제45조(건축물의 높이) ① 영 제72 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

건축하는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안 또는 미관지구에 걸치는 건축 물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역사문화미관지구 : 4층 이하
- 2. 조망가로미관지구 : 6층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는 6층 이하, 조망가로미관지구안에서는 8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1. (생략)
- 2.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, 색채등의 외관을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<u>미관을</u>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
- 3. 대지가 <u>미관도로변</u>보다 현저하 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
- 4. <u>조망가로미관지구</u> 안에서 주변 경관의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

건축하는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음 각 호와 같다.

1.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		
2.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		
②		
<u>건축(경관)위원회</u> -		
<u>경관상</u>		
<u>역</u> 사문화특		
화경관지구조망		
<u>가로특화경관지구</u>		
1. (현행과 같음)		
2 <u>역</u>		
사문화특화경관지구		
<u>경관을</u>		
3 <u>경관도로변</u>		
4.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		

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 구안에서 「건축법」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 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·담장·계단·주차장·화단·영업 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.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

1. ~ 4. (생 략)

지 아니하다.

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 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·세 탁물 건조대·장독대·철조망·굴뚝·환 기시설·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

지역	
5.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	5.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
<u>미관지구</u> 안에서 공공보도의 보	가로특화경관지구
행환경 개선과 <u>도시미관</u> 향상을	도시경관
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	
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	
치하는 경우	
<u><신 설></u>	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
	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
	높이·형태·배치·색채 및 대지안의
	조경 등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필
	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
	로 정할 수 있다.
제46조(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)	제46조(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)
① <u>영 제73조제2항</u> 에 따라 <u>미관지</u>	① 영 제72조제3항 시가지
<u>구</u> 안에서「건축법」제46조제2항 및	경관지구·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·조
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	망가로특화경관지구
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	
곳자무.단자.계다.주차자.하다.연언	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72조제3항----- 시가지경 관지구·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·조망 가로특화경관지구-----

단,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<신 설>

제5절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
<신 설>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<신 설>제7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<신 설>제8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

제3절 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<삭 제>

<u>제4절 그 밖의</u>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<삭 제>

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<삭 제>제6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<삭 제>제7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<삭 제>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 (제5조제2항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강동구	○ 제8조의2(특화경관지구의 세분) 제1항 제1호 -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: 문화 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 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 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구 <제출의견> '건축물 주변'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 한 기준을 제시 필요 (예시 : 건축물 경계로부터 1km 이내)	- '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'는 대 상 건축물 주변의 역사경관의 형태 등을 보존하기 위해 면 적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, 경계설정에 있어 지역적 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합 리적 도시관리 계획 수립 차

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내용이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위한 국토계획법·시행령 개정·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명칭 변경 현황 반영 및 건축법 시행 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 면적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없음

4. 작성자

도시계획과 정성훈 주무관 (2133-8324)